

## 학생 포상 규정

제정 1994. 07. 25.  
3차 개정 2019. 06. 25.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학칙 제47조에 의하여 상지대학교 학생(이하 “학생”이라 한다)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**제2조(포상대상)**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칙 제47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. (개정 2007.5.14)

**제3조(포상종류)** 본 규정에 의한 포상은 이사장상, 단과대학 학업성적우수상, 학과 학업성적 우수상, 공로상, 우수상 등으로 구분한다. (개정 2005.1.24)

**제4조(포상권자)** 이사장상은 본 대학교의 법인 이사장이 수여하고, 단과대학 학업성적우수상, 공로상, 우수상은 총장이 수여하며, 학과 학업성적 우수상은 각 단과대학장이 수여한다. (개정 2005.1.24)

**제5조(결격사유)** 제2조에 해당되는 자라 하더라도 학칙을 위반하여 징계 처분이 있던 자는 제외한다.

**제6조(이사장상)** 본 상은 학칙 제2조의 단과대학 순서에 따라 윤번제로 해당졸업생 중 4개년간 학업성적 평균 최고득점자에게 수여한다.

**제7조(단과대학 학업성적우수상)** 본 상은 각 단과대학 졸업생중 이사장상 수상자를 제외하고 4개년간 학업성적 평균 최고득점자에게 수여한다.

**제8조(학과 학업성적우수상)** 본 상은 각 학과에서 졸업예정자중 단과대학 학업성적 우수상 수상자를 제외하고 4개년간 학업성적 평균 최고 득점자에게 수여한다.

**제9조(공로상)** ① 본 대학교 재학 중 학술연구나 기타 활동으로 학교의 명예와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또는 학생회 활동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졸업해당자에게 수여한다.

② 본 상의 추천은 각 학장 및 **학생행복처장**이 추천한다. (개정 2019.06.25)

**제10조(우수상)** 재학기간중 근면, 성실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. (개정 2005. 1. 24)

**제11조(포상방법)** 이사장상, 단과대학 학업성적우수상, 학과 학업성적우수상은 소정의 서식에 의한 상장을 졸업식장에서 수여한다.

**제12조(부상)** 전조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상패 및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 할 수 있다.

**제13조(포상심사와 결정)** 포상대상자의 선정은 해당 단과대학 각 학과장으로 구성된 교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**제14조(수상자기록)** 수상자는 소정 서식의 대장에 등재하고, 교육연구처 **학사운영팀**에 통보하여 기록하게 한다. (개정 2019.06.25)

**제15조(세부사항)** 본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

**부칙**

- (1) (시행일) 본 규정은 1994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(경과조치) 본 규정 시행 이전 포상자는 이 규정에 의해 포상된 것으로 간주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과-79, 2005.1.24)

이 규정은 200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과-529, 2007.5.14)

이 규정은 2007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** (기획예산팀-330, 2019.06.25)

이 규정은 2019년 06월 25일부터 시행한다.